

# “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사용돼도 전액 보상은 어려워”

## 금융감독원, 분쟁 사례로 본 ‘취약계층 금융거래’ 안내

사실 인지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해외는 현지 신고 사실확인원 필요  
트래블카드는 피해금액 보상 안 돼

이모씨는 태국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신용카드사는 부정 사용금액의 80%만 보상했다. 이씨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통해 “분실·도난 및 부정 사용 관련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상황별 책임 부담률을 산정한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소매치기 등 도난인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돼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카드사나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되더라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



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신고접수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하고 있으므로 트래블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트래

블카드 앱 등을 통해 신고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도 행사 조건을 잘 따져야 한다.

할부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아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또 할부거래 계약이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투자계약, 온라인 광고 계약, 웹드라마 공동제작 계약 등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됐다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농·수·축산물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을 할부로 거래하는 경우도 할부항변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정기결제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사회초년생,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운영한다.

이연수 기자

## 챌린지 성공하면 매일 100% 현금 당첨 퐁렛



### 광주은행 ‘모Wa모Wa 저축 챌린지’

광주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인 입출금 통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모Wa모Wa 저축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미리 설정한 챌린지 금액만큼 잔액을 늘리는 데 성공하면, 매일 퐁렛을 돌려 100% 현금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형 금융 이벤트다.

전월 월평균 잔액 대비 챌린지 금액(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퐁렛 이용이 가능하며, 금액 구간별 최대 3,000명씩 총 9,000명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퐁렛은 최소 1원부터 최대 3,000원의 당첨금을 랜덤으로 즉시 지급한다. 퐁렛 참여 고객 중 △매월 추첨 11명 △매월 잔액 증가 상위 10명 △연말 기준 잔액 증가 상위 10명에게 커피 쿠폰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이연수 기자

##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축소...지방은 그대로

### 금융위, 3단계 DSR 시행안 발표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된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조정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하고, 이런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

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차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 신협 ‘햇살론 플러스’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플러스’를 전국 영업점에서 취급한다고 밝혔다.

햇살론 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침에 따라 신협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증부 정책자금 대출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비율이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됨에 따라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최대 2.5%포인트(p) 이내의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기존 햇살론 대비 낮은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NICE 기준)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자영업자다.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대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연수 기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제조업**  
**주식회사 폴 테크**

도로 안전표지판지주, 신호등주, CCTV지주, 가로등주, 종합플, 태양광 가로등주 등 도로교통지주 분야를 개발, 설계하여 나라장터, 쇼핑몰 제품등록, 정부 R&D를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시스템을 교통지주와 결합하는 아이디어 제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표지판 지주    신호등주  
폴테크 외부 전경    폴테크 내부 전경

**주식회사 폴테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리팩토리 대불) 공장동 106호  
Tel. 061) 464-8992 Fax. 061) 464-8993